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2263)

2024. 12. 1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263

Ⅰ. 조례안 개요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24년 10월 16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청년층 전체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추진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4. 9. 12. ~ 10. 2.) 결과: 의견없음

(2) 신 · 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복지실 복지정책과 김선준 (☎ 2133-7346)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 본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같은 취지로 청년 대상 사업에 있어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27회 정례회에 제출[1]되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위원회 수정가결).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검토

가.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

○ 서울시에서는 2022년 9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1) 의안번호 2272, 제출일 : 2024.10.16.,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가족돌봄청년지원조례 제·개정내용

- 2022년 9월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조례』 제정
- 2023년 7월 지원사업 추가('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 2023년 12월 지원사업 추가(‘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
  가족돌봄청년의 나이변경(기존 14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4세 이하로 변경)

나. 개정안 주요 내용

○ 본 조례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제11조 (생 략)	제11조·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

○ 본 조례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지원연령 상한 연장대상 사업은 조례 제7조(지원사업)에서 규정된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임.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5.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6.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7.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
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9. 가족돌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다. 제대군인 우대 지원 관련 법적 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제대군인의 사회복지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인력 개발·활용, 복무 경력 인정 및 기술 등의 사회 활용, 고용 증진과 생활 안정에 대한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3.(생략)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 또한 지원 연령 상한 연장을 최대 "세 살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데, 병역법상 현역의 복무기간은 육군/해병대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각각 18개월, 20개월, 21개월로 단축시행 중), 보충역 2년 2개월(21개월로 단축 시행)이나, 대체역의 경우 최대 36개월임을 고려할 때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됨

라. 의무복무 제대군인 서울시 지원현황

○ 청년기(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정의에 따른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의미함)에 의무복무를 하게 되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에 집중되어 있음.

○ 서울시에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각종 청년 정책사업의 참여기간을 군대 복무기간만큼 늘려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할 계획임.

○ 현재 서울시에서 청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 51개 중(붙임자료 참조), 일자리와 관련한 ‘미래 청년 일자리’, ‘서울 매력일자리(뉴딜)’,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 사업 등 6개 사업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의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 규정을 준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들(청년월세지원, 청년수당,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등 24개)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

- 이러한 조례 근거 마련을 위해 금번 제327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위원회 수정)되었음.

마. 용어 명확화 필요

○ 개정안에서는 지원 연령 상한을 정함에 있어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대군인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 중 **“보충역”과 “대체역”의 경우에는 ‘군’에서 근무하지 않고 공익 분야에서 복무**하는 경우도 있어 보충역과 대체역의 경우에는 지원 연령 상한 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병역의 종류**

역종	현역		보충역	대체역
복무형태 (간부제외)	현역병 (육·해·공군, 해병대)	전환복무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병역의무자 중「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 **보충역 구분에 따른 복무기관(장소), 복무방법 등**

1. 사회복무요원 :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사립학교, 비영리기관 등
2. 예술·체육요원 : 해당분야에서 34개월 복무(봉사시간 이수)
3.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 종사
4.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생산 분야 종사

□ **대체역의 복무분야, 복무기관(장소) 등**

1. 대체업무 : 대체복무기관인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복무
2. 복무분야 :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 서울시의 개정 취지도 보충역과 대체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법률에서도 모두 포함하여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군복무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같은 이유로 제32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해당부분이 수정·가결되었음

〈표〉 관련 조례안 심사 현황

의안명	제출자	제출일자	주요내용	진행단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장	24.10.16.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	위원회 수정가결

3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군 복무기간 동안 가족돌봄청년 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관련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에서는 지원 연령 상한을 정함에 있어 ‘제대군인의 군복무기간을 고려’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있는데, 「제대군인법」의 취지와 규정에 맞도록 ‘군복무기간’은 ‘복무기간’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서울시 청년정책 제대군인 우대정책 현황 (51개)

* 번호 '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연번, 조례 조례상 청년 연령 대상 사업, 분장 사회보장협의 필요 사업

구분	제대군인법령, 시방침 근거	조례개정 후 시행예정	실익없음
50개	6개(기시행 3, 예정 3)	24개	17개
사업명	6.조서울 매력일자리(뉴딜) 8.조미래 청년 일자리 9.조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 ※ 기 시행 3개 사업 1.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3.청년인턴 직무캠프 41.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	2.조취업날개 서비스 4.조일자리카페운영 5.조청년일자리 매칭 전담창구 운영 10.조분장서울 청년 해외일경험 사업 11.조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13.조청년 쿡 비즈니스센터 14.조캠퍼스타운 혁신 및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15.조프렙아카데미 운영 16.조로컬크리에이터 양성 17.조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19-2.조분장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무주택세대주 청년,'26년) 21.조분장청년월세지원('26년) 30.조청년인생설계학교 34.분장청년수당 36.분장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38-2.조청년층신용회복지원(학자금 대출) 39.조청년 마음건강 지원 42.조가족돌봄 청년 지원 43.조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44.조고립은둔청년 지킴이 양성교육 46.조청년참여기구 운영 49.조청년봉사단 운영 50.조청년해외봉사단 51.조지역별 청년센터 설치·운영 52.조서울 광역청년센터 운영	7.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15세 이상은 연령 무관 신청 가능) 재학생 및 휴학생이면 지원 가능) 12.청년창업꿈터운영(25년 4월 종료) 19-1.신혼부부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이내 예비부부 신고시점으로 연령 무관) 20.청년과 어르신 주거 공유 (연령, 제대군인 관계없이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이면 지원 가능) 22.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이사 후 2년이내 신청해야 하는 사업으로 제대군인 연령 연장 실익 없음) 25~29. 각종 장학금 지원 5개 사업 (연령, 제대군인 관계없이 장학금 지원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31.청년문화패스지원(군복무중 신청 가능) 32.~33.청년예술청 지원 등 2개 사업 (예술인 지원 조례로 지원대상 확대) 35.서울 영테크(군복무중 신청 가능) 37.학자금대출이자지원(연령 무관 지원) 38-1.청년층신용회복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신용회복위 사업) 40.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원 (군 입대 중에도 수당 지급) ※ 추가 검토 4개 사업 18.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국토부 지침 개정 필요) 23.청년안심주택 매입 (국토부 지침 개정 필요) 24.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국토부 훈령 개정 필요) 45.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부 지침 개정 필요)

※ ① 추가 검토(4개) : 중앙부처 훈령, 지침 개정 선행 필요에 따른 건의 검토
② 실익없음(17개) : 사업 신청시 '연령 무관', '군 복무 중에도 지원' 가능

※ 출처 :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